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88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0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 조항 및 안전기준 단서조항에 따른 예외 사유를 마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작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규정 (안 제9조의2제1항)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
나.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안전기준의 예외사유를 규정 (안 제9조의2제2항)

- 주간작업 및 3인 1조 작업을 원칙으로 하되,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,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의 예외사유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, 우리 구 작업환경에 맞는 예외사유를 마련함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, 「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1. 7. 29. ~ 8. 18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
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
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5) 제1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1.8.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조”를 “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조”로 한다.

제9조의2부터 제9조의3까지를 각각 제9조의3부터 제9조의4까지로 하고,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간작업의 예외

가. 주택가, 재래시장, 이면도로 등 주간작업 시 구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

나. 소각·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

다.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, 구민 불편 등을 고려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2. 3인 1조 작업의 예외

가.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 사전작업

나. 가로청소작업

다. 자동상차장치, 압착장치 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된 차량 및 도로용

청소차량,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한 작업

라. 1.5톤 미만 차량으로 생활폐기물(재활용품 포함)을 수집·운반하는
작업

마.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

바.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 경우

사.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 작업의 예외가
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폐기물의 광역관리 등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 영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」 제5조에서 정한 자에게 위 탁할 수 있다. ③ ~ ⑤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7조(폐기물의 광역관리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「폐 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법 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제5 조-----.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2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) ① 구청장 또 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 은 업체는 법 제14조의5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 른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 다.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 항제3호 단서의 예외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주간작업의 예외 가. 주택가, 재래시장, 이면 도로 등 주간작업 시 구민의 보행 및 차량의 통행 등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경우 나. 소각·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

경우

다. 그 밖에 폐기물 처리의
시급성, 구민 불편 등을 고
려하여 작업 시간 조정이 필
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
경우

2. 3인 1조 작업의 예외

가. 손수레 등을 이용한 골목길
사전작업

나. 가로청소작업

다. 자동상차장치, 압착장치
등 상차 보조장치가 부착
된 차량 및 도로용 청소차
량,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
를 사용한 작업

라. 1.5톤 미만 차량으로 생
활폐기물(재활용품 포함)을
수집·운반하는 작업

마. 민원 처리를 목적으로 기
동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

바. 수집한 폐기물을 수송차량
으로 처리시설까지 운반하는
경우

사. 그 밖에 작업환경 및 차
량의 특성에 따라 3인 1조
작업의 예외가 필요하다고
구청장이 인정한 경우

제9조의2 · 제9조의3 (생 략)

제9조의3 · 제9조의4 (현행 제9조

의2 및 제9조의3과 같음)

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조례는 상위법령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관련 작업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

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청소행정과 안영미 (☎ 3153-9203)